양주 고읍택지지구 A-10블럭 한양 수자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하시기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본 아파트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1,2,3순위 청약이 제한 됨. ■ 양주시는 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마이너스 옵션제 적용주택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건축과 - 25980호(2008. 06. 2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택지개발지구 A-10블럭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15층 14개동 아파트 764세대 및 기타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세대(3자녀특별공급포함) 98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 택 형	세 대 별 계 약 면 적					세 대 당 대지지분	공 급 세대수
					공 급 면 적				기 타 공 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양주시	수도권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민영주택	21990-01	21991-01	2008000603 (01)	80.9885	59.9067	21.0818	80.9885	34.1890 (30.7533)	115.1775	40.6726	305
	21990-02	21991-02	2008000603 (02)	81.4277	59.9436	21.4841	81.4277	34.2101 (30.7723)	115.6378	40.6977	160
	21990-03	21991-03	2008000603 (03)	114.2463	84.9865	29.2598	114.2463	48.5022 (43.6281)	162.7485	57.7001	211
	21990-04	21991-04	2008000603 (04)	114.5157	84.9345	29.5812	114.5157	48.4724 (43.6014)	162.9881	57.6648	88

주 택 형	층 별 구 분	세대수	세대당 분양가격 (천원)			계 약 금 (계약시)	중 도 금						잔 금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합 계		1회 (08.10.10)	2회 (09.02.10)	3회 (09.06.10)	4회 (09.09.10)	5회 (09.12.10)	6회 ('10.03.10)	
80.9885	1층	14	57,233	114,767	172,000	10,000	17,200	17,200	17,200	17,200	17,200	17,200	58,800
	2층	23		122,767	180,000	10,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62,000
	기준층	245		131,767	189,000	10,000	18,900	18,900	18,900	18,900	18,900	18,900	65,600
	최상층	23		148,767	206,000	10,000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72,400
81.4277	1층	7	57,269	114,731	172,000	10,000	17,200	17,200	17,200	17,200	17,200	17,200	58,800
	2층	11		122,731	180,000	10,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62,000
	기준층	131		131,731	189,000	10,000	18,900	18,900	18,900	18,900	18,900	18,900	65,600
	최상층	11		148,731	206,000	10,000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72,400
114.2463	1층	7	81,194	169,806	251,000	10,000	25,100	25,100	25,100	25,100	25,100	25,100	90,400
	2층	16		179,806	261,000	10,000	26,100	26,100	26,100	26,100	26,100	26,100	94,400
	기준층	172		193,806	275,000	10,0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100,000
	최상층	16		217,806	299,000	10,000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109,600
114.5157	1층	4	81,144	169,856	251,000	10,000	25,100	25,100	25,100	25,100	25,100	25,100	90,400
	2층	6		179,856	261,000	10,000	26,100	26,100	26,100	26,100	26,100	26,100	94,400
	기준층	72		193,856	275,000	10,0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100,000
	최상층	6		217,856	299,000	10,000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109,600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등록세,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는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주택으로 공급평형별 3%를 특별 공급함.
- 양주시는 2006년 12월 22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3항(76세대)]

주 택 형 (㎡)	80.9885	81.4277	114.2463	114.5157	계
공급세대	30세대	16세대	21세대	9세대	76세대

- 특별공급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한이 있는 자는 제외)
- 특별공급세대 : 전용 85㎡이하 공급규모 764세대의 10% 이내로 총 76세대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6. 30(월) (10:00 ~ 14:00) / 당사 견본 주택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6. 30(월) 16:00 / 당사 견본 주택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대상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6. 27)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기재) 1통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및 인정서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이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처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증명(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2.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9조 제6항 (22세대)]

주 택 형 (㎡)	80.9885	81.4277	114.2463	114.5157	계
공급세대	10	4	6	2	22
경 기 도	5	2	3	1	11
서 울 시	4	2	2	1	9
인 천 시	1	0	1	0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08. 6. 2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함.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간주함.
- 3자녀 특별공급시 배점 기준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추가)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시 ·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사 견본주택 방문 신청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8. 6. 30(월) (10:00 ~ 14:00) 당사 견본 주택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6. 30(월) 16:00 /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3. 일반공급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6. 27) 현재 양주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자로서 세대주 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을 감액해야 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거주지역 해당 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은 각각 청약신청이 가능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 가능함.
-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1 · 2 · 3순위 청약이 불가한 재당첨제한이 적용됨

▣ 청약가점제 우선공급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1,2순위 공급물량의 전용면적 85㎡이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공급함
- 가점제 공급물량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구 분	면적구분	공 급 기 준
청약가점제	전용면적 85㎡이하	•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가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75%우선 공급함 (나머지 25%는 추첨제를 적용함)
	공통사항	• 각 주택별로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순위를 취득한 자 • 가점제 신청분 중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일반 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 '감점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 한다 •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 점 항 목	가점상한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④ 감점	• 2주택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④						

▣ 순위별 청약자격 및 접수일

구분	순 위	주택형 (전용면적)	신 청 자 격	거주 구분	접수 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신청자격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양주시 / 수도권	2008. 7. 2 (수)	• 접수장소 – 인터넷 : · 국민은행 (www.kbstar.com)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www.apt2you.com) – KB모바일 Mbank, Kbank, Bankon • 접수시간 : 08:30 ~ 18:00	• 발표일시 : 2008. 7.10 (13: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2008. 7. 10 문화일보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주택형 (85㎡이하)	•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 (구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 5. 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1순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청약자 본인, 배우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세대에 속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한 세대에 속한 분 –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한 세대에 속한 분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 (단, 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청약이 가능함)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하여야만 1 · 2 · 3순위 청약이 가능함)				
	2순위	가점제 · 추첨제 신청자격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8. 7. 3 (목)		
		전주택형 (85㎡이하)	•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분 (단, 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청약 불가)				
	3순위	전주택형 (85㎡이하)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2008. 7. 4 (금)	• 국민은행 인터넷, 모바일 • 접수시간 : 08:30~18:00	

▣ 경과기간 및 요건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② 94. 8. 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②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신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사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재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8.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신청접수 방법

1. 공 통
   – 충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양주시 거주자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에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
   –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70%를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순위 내에서 양주시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시에는 전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 공급함.
2. 1, 2순위
   – 1순위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1순위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보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3.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4.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 및 접수은행에는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 · 모바일 청약신청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통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 2순위 :